

「2023년 소셜벤처 육성사업」 관리기관 모집 재공고

소셜벤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2023년 소셜벤처 육성사업」 관리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12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 모집개요

사업목적

-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를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

모집규모 : 관리기관 1개 기관

사업기간 : `23.1월~`23.12월 (약 12개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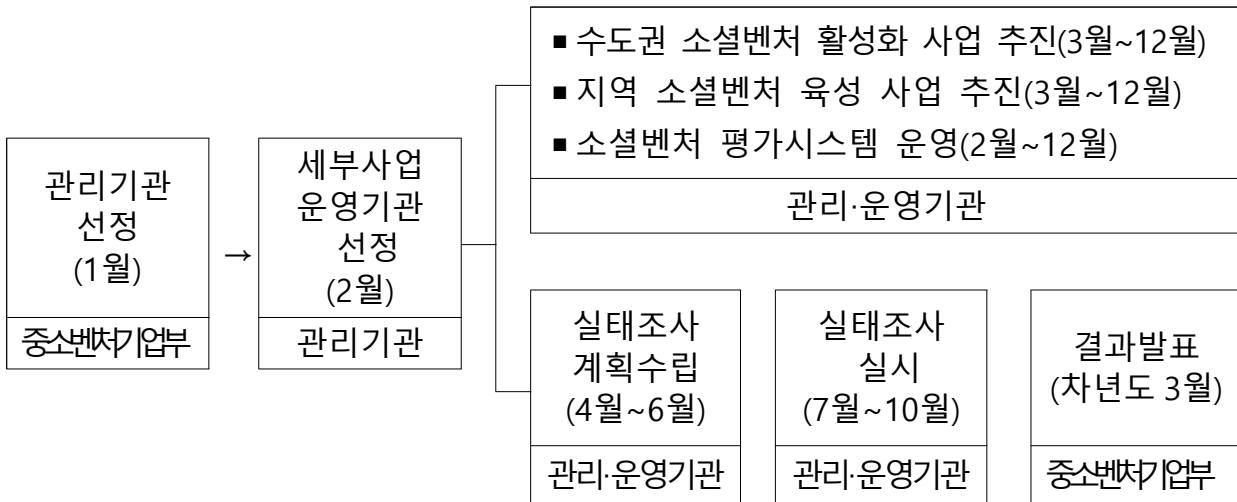
예산액 : 총 2,002백만원

※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따른 보조금

기관별 역할

구분	업무
중소벤처기업부	- 기본계획 수립, 세부사업 계획 승인
관리기관 (보조사업자)	- 소셜벤처 육성사업 세부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- 간접보조사업자 공모, 운영, 관리
운영기관 (간접보조사업자)	- 수도권 소셜벤처 활성화 사업 운영 - 지역특화 소셜벤처 육성 사업 운영

□ 사업추진일정



※ 관리기관 : 중간보고 '23.8월 / 사업완료 '24.1월(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)

□ 세부사업내용

구분	업무
수도권 소셜벤처 활성화	수도권 소재 중간지원조직*에 재정지원을 통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·심화 운영 *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사,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등
지역 특화 소셜벤처 육성	비수도권 소재 중간지원조직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특화 소셜벤처를 발굴·육성
소셜벤처 실태조사	소셜벤처의 일반현황 및 경영성과, 사회적 문제 해결 분야 등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자료 확보
사회적 가치 측정	IMP방법론을 활용하여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태계 전반에 확산
소셜벤처 평가시스템 운영	소셜벤처 판별 및 사회적 가치 측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, 지원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셜벤처 정보를 제공

2

신청자격

-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, 중소기업 지원과 컨설팅 등의 역량을 갖추고 모집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기관

- ①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5인 이상의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
- ② 소셜벤처 평가시스템의 유지·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IT 관련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
- ③ 지역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상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역(서울 제외)에 3개 이상의 지사(지점)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

- 다만,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대표사 및 분담이행 업체로 하여 2개사 이내(대표사 포함) 공동수급(분담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)이 가능하며, 공동수급체(대표사 및 분담이행 업체)는 상기 ①~③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
 -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의 규정에 따르며,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

<예시 : A사와 B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>
 - 상기①의 요건은 A사와 B사가 각각 충족해야 함
 - 상기②, ③의 요건은 A사 또는 B사 1개사만 충족할 경우도 가능

- 보조금(간접보조금 포함)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은 신청 제한

3 제출서류 및 방법

- **제출서류**
 - 사업신청서(공문)
 - 사업계획서(요약문 포함, 붙임 양식 참조)
 - 기타 구비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

□ 제출기간 및 장소

- (제출기간) '23. 1. 19. 18시까지
- (제출방법) 전자문서* 및 우편**(등기) 접수(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
 - * 전자문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
 - ** 우편제출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사전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우편제출 사실 통보
- (제출장소) : (우)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(어진동)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

4

선정방법 및 결과발표

□ 평가위원회 : '23. 1. 27.(예정)

* 정확한 일시는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예정

□ 평가위원 구성

- 평가위원은 내·외부 5인 이상 7인 미만으로 구성

□ 평가방법

- (서류심사)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 기본심사
- (정성평가) 신청자의 사업계획 설명(PPT 발표) 및 질의·응답
 - * 제출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

□ 세부 평가기준

-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기준
 - * 4개 영역으로 구성, 각 영역별 5점 척도 적용

<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>

평가기준	세부평가기준	배점
1. 사업목표의 적절성	■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	20
	■ 공익적 목표에의 기여가능성	
2.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	■ 사업목표와 내용의 일관성	30
	■ 사업내용의 적절성	
	■ 사업일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	
3. 사업수행능력	■ 사업계획 예산의 적절성	30
	■ 사업 수행인력의 적절성	
	■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	
4.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	■ 보조금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	20
	■ 사업 활용전략의 우수성	

□ **최종결과 발표** : '23. 1. 30.(예정)

-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 공고하고, 선정기관에 개별 통지

5 유의사항

- 동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조사업임
-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
-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,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 -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교부 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교부 취소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
- 사업 추진, 집행, 정산 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」 등 관련 법규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및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

-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제안한 과업 이행 내용, 이행 일정 등의 교부신청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,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

□ 문의처

-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☎ 044-204-7705, e-mail : trustkis@korea.kr

붙임 : 사업계획서 등 양식 1부. 끝.